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장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2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평남·전석기·최웅식·김정환·
김제리·김동식·이정인·김경우·
송재혁·김상훈·이승미·송명화·
김수규·이광성·노승재·김기대·
조상호·송아량·이현찬·최선·
이영실·정진철·김기덕·박기열·
성흠제·김희걸·문병훈·강동길·
홍성룡·김상진·서윤기·최정순·
김광수·문영민·채유미 의원(3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자치구의 재정 악화로 거리 쓰레기통을 대폭 줄여 휴지통 증설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거리 미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악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2012년부터 「가로휴지통 증설·관리개선 계획」을 수립하여 보급형 디자인 개발과 민간 참여방식을 도입하였음.
- 하지만 민간 참여방식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자치구별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현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.
- 이에 이러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지원 및 조정 사항으로 명확

히 규정하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거리 쓰레기통 등 공중 폐기물 수집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 함(안 제2조제1항제2호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거리 쓰레기통 등 공중 폐기물 수집 설비의 설치비용의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거리 쓰레기통 등 공중 폐기물 수집 설비의 설치비용의 지원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